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8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전홍배 의원

1. 제안이유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의안 회부, 주민조례청구,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일정 작성 및 의안 제출 관련 사항 정비(안 제9조, 제12조)

나. 의안 회부 및 안건심의 절차 정비(안 제13조, 제17조)

다.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식 추가(안 제40조)

라.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 정비(안 제66조, 제7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긴급하다고”를 “긴급하다고”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를 “의장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을 “의장”으로, “받아”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후”를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로, “바로 본회의”

를 “본회의” 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의결로” 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 한다.

제23조 중 “의결로 다시” 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 한다.

제24조 중 “소관 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 를 “기립·거수, 기명투표 또는 전자투표” 로 한다.

제2장제7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를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 중 “의사” 를 “심사” 로 한다.

제69조 중 “다시 심사” 를 “재심사” 로, “본회의의 의결로” 를 “본회의의 의결로써” 로, “한정하여” 를 “한해” 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결산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결산등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

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을 “일정한”으로,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은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u>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u>긴급하다고</u>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9조(작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u>긴급하다고</u> ----- ----- ----- -----.
제1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 략) ③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u>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제1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의장이</u> ----- -----.
제1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u>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u>	제13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u>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u>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여 회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의원 사직 등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안

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하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
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은 본회

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

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간) ① (생략)

②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심의) ① 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거쳐 -----.

② -----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

제16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
본회의-----.

제1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
-----.

제22조(안전심의) ① -----

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재회부) 본회의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보
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
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
촉되는 등 명백히 오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조항·문구·숫자
·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
이 있는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
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
립·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

----. -----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회부) -----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

-----.

제24조(의안의 정리) -----

위원회-----.

제40조(표결방법) ① -----
----- 기
립·거수, 기명투표 또는 전자
투표-----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생략)

제7절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등

제48조(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④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하고, 이를 제외한 절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차 등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49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대표자”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0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

<삭 제>

<삭 제>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 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⑤ 청구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
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
는 안 된다.

제66조(예산안등의 심사) ① 의회
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이 제출
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
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를 첨부하여 예산안등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
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
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
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

제66조(예산안등의 심사) ① ----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
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
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삭 제>

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8조(예산안등의 의결) ① (생략)

② 예산안등의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9조(예산안등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결산등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의 결산(이하 “결산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

<삭 제>

제68조(예산안등의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사

-.

제69조(예산안등의 재심요구) ---
----- 재심사-----

본회의의 의결로써 ----- 한해

-----.

제70조(결산등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결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등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결산등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등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결산등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5조(경호) ① -----
----- 일정
한 -----

----- 있
다.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법률)」(2026.3.5. 일부개정, 2026.7.1. 시행)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8.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